

# 보도자료



2017년 7월 27일(목) 배포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7월 28일(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7월 27일(목) 낮 12시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담당과장: 인민호(044-200-4450)

담당: 임지석 법무관(044-200-4461)

## P2P대출, 투자자에게 추심 수수료, 채권 매각 정보도 미리 알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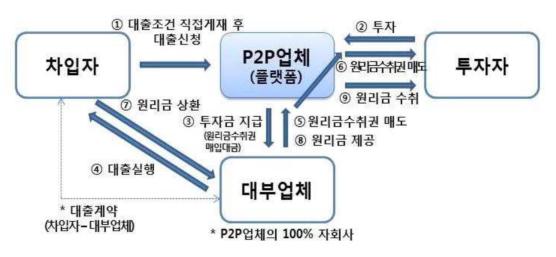
- 11개 P2P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 약관 등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신유형 금융인 P2P 대출(개인 간 대출) 관련 규제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1개 온라인 P2P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 약관과 누리집 이용 약관 등을 직권으로 심사하여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 \*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중 2017년 3월 31일 기준 대출 잔액 100억 원 이상인 [붙임] 11개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 \*\* 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함.
  - 차입자의 채무 연체 시 **채권 추심 위임, 채무 감면, 채권 매각** 등이 결정되는 조건과 절차, 그에 따른 수수료나 손실액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투자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고,
  - 투자 손실에 대하여 사업자를 **무조건 면책**하는 조항,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 당사자에게 통보없이 **투자를 취소**하거나 **투자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 등도 함께 시정하였다.
- 이번 약관 정비를 통해 투자자에게 수익률 뿐만 아니라 **연체 시의** 채권 관리 방식도 고지되어 금융위 가이드라인과 함께 시장이 투명 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 조사 배경

- □ 온라인 P2P(Peer to Peer) 대출이란 개인 투자자와 개인 자금 수요자 사이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금융 형태로서, 최근 핀테크 열풍과 함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 P2P대출에서 대출 채권의 관리·처분 권한은 사업자에게 있는 반면, 투자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므로,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으나, 다른 금융업 분야에 비해 규제 수준은 낮은 상황이다.

#### 〈P2P 대출의 구조(대부업체 연계형)〉



- \* 출처: 금융위원회
- 실제 미국(美) 렌딩클럽의 부정대출 사건, 중국(中) e쭈바오의 횡령 사건, 한국 머니옥션의 투자금 지급 지연 사건 등 P2P 투자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회와 언론에서 **투자자 보호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발표된 한국소비자원의 P2P대출 실태조사 결과와 올해 5월부터 시행된 금융위원회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P2P대출 플랫폼 이용 약관에 포함된 불공정 약관을 점검ㆍ시정하였다.

# 2 주요 시정 내용

### 1. 자의적인 추심 위임 조항

- □ (시정 전) 연체가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사업자 재량으로 추심 업체에 채권 추심을 위임하고 추심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
- □ (불공정성) P2P 대출 계약에서 P2P 플랫폼 사업자와 연계된 대부 업체는 법적인 채권자로서, 연체 채권에 대한 추심 업무를 제3의 업체에 위임 할 권리가 있으나.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고객이 진다.
  - o 추심 업무를 추심 업체에 위임하는 경우 **추심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는 고객인 투자자의 부담이 되나. 해당 약관 조항들은 사업자가 어떠한 경우 추심을 위임하는지, 그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 o 따라서 사업자는 추심 위임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추심을 위임**하여 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당하다. (약관법 제10조 제1호)
- □ (시정 후) 추심 위임 조건과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해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1. "여신회사"는 본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1. "여신회사"는 본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채권 경우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채권 의 추심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의 추심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의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차례 유선상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연락 "여신회사"가 판단한 경우 이 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직접 채권상환의 지가 없음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현장방문 진행 등 채권의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하다고 "여신회사"가 판단한 경우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해 채권 추심을 위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해 채권 추심을 위 임하는 경우, 채권 회수금액의 일정비율에 임하는 경우, 채권 회수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회수성공수수료를 "여신회사"가 해당하는 추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여신

추심을 위임한 업체에 지불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투자금의 손 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수취할 수 있으며, 이는 "여신회 사"가 추심을 위임한 업체에 지불하는 추 심수수료 및 "여신회사"가 직접 투여한 채 권추심비용의 보전을 위한 추심성공수수료 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a. <u>채권 연체기간 6개월 미만 : 회수금액</u> 의 최대 15%
- b. <u>채권 연체기간 6개월 이상 12개월 미</u>만 : 회수금액의 최대 20%
- c. <u>채권 연체기간 12개월 이상 : 회수금액</u> 의 최대 30%

### 2. 자의적인 채권 매각, 채무 감면 조항

- □ (시정 전) 사업자가 채권 매각을 결정하는 조건, 절차 등의 사전 고지나 투자자 동의없이 채권을 매각하거나, 차입자의 채무를 감면해주고 투자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 □ (불공정성) 대출 계약의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지연하여 상환 가능성이 낮은 경우, 채무 일부를 감면해 주거나 채권 자체를 제3자 에게 매각함으로써 투자금의 일부라도 일찍 회수하고 투자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사업자와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다.
  - 그러나 대출 채권을 **할인하여 매각**하거나 채무자의 채무 일부를 **감면** 해주는 경우 투자자의 **수익이 감소**하거나 경우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그런데 사업자로서는 투자자들에게 공시되는 **연체율**을 관리하거나 유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근거로 **불필요하게 채권을 할인하여 매각**하거나 **채무를 감면**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 (약관법 제10조 제1호)
- □ (시정 후) 사전에 채권 매각 조건, 절차 등을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하고 이에 대해 **투자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해당 대출건의 연체일이 365일을 초과할 경우 여신업체는 해당 채권을 신용회복기 금 혹은 여신업체가 지정하는 업체에 튀 자자의 동의 없이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①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건 중 투자자의 투자금과 투자수 익률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건 에 한하여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는 해당 채권을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 가 지정하는 업체에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은 투자자에게 조기상환될 수 있습니다. 회사 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는 채권을 매각하기 3일 전까지 제20조 (회원에 대한 통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해관계 있는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이러한 사항을 사이 트에 게시합니다.
  - ② 채권을 매각하게 되는 경우 중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 건의 연체일이 90일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채권을 할 인하여 매각할 수 있고. 해당 채권의 매각 금액에서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잔여금을 회사에 지급할 수 있으며, 회사 는 지급받은 금액을 자금출연 비율에 맞 게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 자는 채권의 매각으로 인해 투자금의 손 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포괄적인 사업자 면책 조항

- □ (시정 전)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투자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불공정성) P2P 대출은 성질상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금융위 가이드라인도 P2P 대출 사업자 들이 '원금 보장', '확정 수익' 등의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 그러나 투자 손실이 발생함에 있어 사업자가 고객에게 차입자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채권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과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 따라서 투자 손실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은 부당하다.(약관법 제7조 제1호)
- □ (시정 후)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고객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회사와 여신업체는 귀하의 투자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 <u>어떠한 책임</u>도 지지 않으며, 귀하는 <u>어떠한 경우에도</u> 회사와 여신업체에게 귀하의 투자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한 법적, 사회적, 물질적 배상 및 보장을요구할 수 없습니다.

####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회사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는 귀하의 투자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귀하는 <u>회사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발생한</u> 귀하의 투자 행위에 따른 결과에대한 법적, 사회적, 물질적 배상 및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4. 채권 양도 금지 조항

- □ (시정 전) 투자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 (불공정성) P2P대출 계약에서 투자자가 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인 '원리금 수취권' 은 일종의 금전 채권으로서, 성질상 양도가 가능한 권리이다.(민법 제449조 제1항)
  - 다만 원리금 수취권의 양도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 **불법 추심**이나 **개인 투자 한도 초과**, 채권 귀속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는 있다.
  - 그런데 플랫폼 **회원 간 양도**와 같이 양수인이 **투자자 자격**을 갖추었는지, **개인 투자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는지 등을 사업자가 파악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채권 양도를 **전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 (약관법 제11조 제3호)

□ (시정 후) 양수인이 플랫폼 회원이거나 **양수인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투자자 정보를 알 수 있고, 개인 **투자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 원리금 수취권을 **양도할 수 있다**.

####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투자자"는 "회사"의 약관에 따라 투자하여 획득한 "회사"와 "여신회사"가 제공한지위와 권리를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라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회사"의 약관에 따라 투자하여 획득한 "회사"와 "여신회사"가 제공한 지위와 권리를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라도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는 양수인이 투자회원 가입 등 결격사유가 없고 정상적인투자회원 가입이 될 경우에는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5. 통보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 □ (시정 전) 회사가 별도 **통지없이 투자를 취소**하거나 **투자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 (불공정성)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면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하고, 이행 가능성이 없거나 그 밖에 최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적어도 해제 또는 해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는 하여야 한다.

(민법 제543조 제1항, 제544조)

- P2P대출 계약에서의 **투자 취소**나 **투자자 자격 박탈**도 일종의 계약 해제 내지 해지에 해당하므로 최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 사업자가 고객에 대한 **통지없이 투자를 취소**하거나 **투자자 자격을** 박탈하게 되면 고객은 **잘못을 시정**하거나 **이의 제기**할 기회가 없게 되므로 부당하다.(약관법 제9조 제3호)
- □ (시정 후) 투자 취소나 투자자 자격 박탈 시 해당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시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투자자가 아래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투자자가 아래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u>별도의 통보 없이</u> 투자자 자격을	회사는 <u>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 내지</u>
박탈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시정을 요청하고, 이러한 이행 내지 시정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없는 경우 해당 투자자와 계약을 해지
	<u>하거나</u> 투자자 자격을 박탈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6. 약관 개정 절차 조항

- □ (시정 전) 회사가 수시로 재량에 따라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 (불공정성) 약관이 개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고객에게는 계약 체결 시의 약관을 적용하여야 하나, 고객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관 개정에 동의하는 경우 개정된 약관을 적용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웹사이트 회원 약관은 일정 기간 **누리집에 약관 개정 사항을 게시**하면 이용 고객이 이를 인지하고 웹사이트를 계속 이용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 그러나 P2P 대출 계약의 투자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수수료 규정 등 약관의 개정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게 되므로 약관 개정에 대한 개별 통지 절차가 필요하다.
  - 따라서 사업자가 약관을 재량에 따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하는 것만으로 약관을 개정하는 것은 이해 관계있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합의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약관법 제12조 제1호)
- □ (시정 후) 약관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여 고객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고, 고객이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약관을 적용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귀하는 본 약관과 "서비스이용약관"의 모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					
든 조항에 동의하며, 이러한 조항들은 <u>"회</u>	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					
사"가 필요한 경우 "회사"의 재량 내에서 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						
<u>수시로 개정</u>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일까지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고 <u>개</u>					
	<u>별통지(전자우편, sms 등)</u> 하는 방식으로					
	공지합니다.					

### 7.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관할 합의 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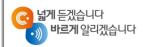
- □ (시정 전) 계약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업자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한다.
- □ (불공정성) P2P대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투자 손실이나 투자금 지급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 그런데 P2P대출은 **온라인으로 계약이 체결**되므로 사업자의 본사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고객도 제한없이 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의 주소와 무관하게 **사업자의** 본사 소재지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피해를 입은 고객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므로 부당하다.(약관법 제14조 제1호)
- □ (시정 후) 고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 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u>회사의 본사 소재</u>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u>제</u>
지 관할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소 당시의 귀하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
	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u>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u>

# 3 기대 효과·계획

- □ 공정위는 이번 약관 점검을 계기로 투자자들이 수익률 정보뿐만 아니라 **추심 수수료**, **채권의 관리와 매각 방식** 등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 또한 P2P대출 사업자 스스로 **투명성을 제고**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 □ 공정위는 향후에도 **새로운 거래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조사 대상 사업자 및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





# 조사대상 사업자 및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사업자 (서비스명)	자의적 추심위임	채권매각 채무면제	투자손실 면책	채권양도 금지	통보없이 계약해지	약관개정 절차	부당한 합의관할
㈜테라핀테크 (테라펀딩)	0	0	0	0	0	0	0
㈜루프펀딩 (루프펀딩)	0	0	0	0	0	0	0
㈜빌리 (빌리)	0	0	0	0	0	0	0
㈜에잇퍼센트 (8퍼센트)	0	0		0	0	0	0
㈜피플펀드컴퍼니 (피플펀드)	0	0		0		0	0
㈜렌딧 (렌딧)	0	0	0	0	0	0	0
㈜투게더앱스 (투게더앱스)	0	0	0	0		0	0
팝펀딩㈜ (팝펀딩)	0	0	0	0	0	0	0
㈜크라우드연구소 (펀딩플랫폼)	0	0	0	0	0	0	0
㈜펀듀 (펀듀)	0	0		0		0	0
㈜어니스트펀드 (어니스트펀드)	0	0	0	0	0	0	0